

광주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14733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14733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9. 21 선고 2017가합10030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지아이앤디

피고, 항소인 G

피고, 피항소인 1. 망 A의 소송수계인

가. BD

나. BE

다. BF

라. BG

마. BH

2. B

3. C

4. D

5. F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변론 종결 2018. 6. 22.

판결 선고 2018. 7. 2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9. 21. 선고 2017가합10030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제1심피고 E,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망 A의 소송수계인(이하 '피고'라 한다) BD은 9,016,000원, 피고 BE은 9,016,000원, 피고 BF은 9,016,000원, 피고 BG은 9,016,000원, 피고 BH은 9,016,000원, 피고 B은 48,700,000원, 피고 C은 10,900,000원, 피고 D는 49,000,000원, 피고 F은 56,000,000원, 피고 H은 15,480,000원, 피고 I는 21,200,000원, 피고 J은 8,660,000원, 피고 K는 9,000,000원, 피고 L은 6,390,000원, 피고 M은 6,390,000원, 피고 N은 19,000,000원, 피고 O는 28,870,000원, 피고 P는 19,000,000원, 피고 Q은 14,500,000원, 피고 R는 14,500,000원, 피고 S는 11,400,000원, 피고 T은 21,000,000원, 피고 U은 15,000,000원, 피고 V은 14,000,000원, 피고 W는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F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광양시 AM 답 4,036㎡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 G

가. 청구취지

피고 G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G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광양시 AD(이하 'AD'라 한다) 일대 토지들을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7년 2월경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들 소유인 AD리 토지(이하 <표1> 기재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들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A는 2018. 1.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BD, BE, BF, BG, BH이 있다.

<표1: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 계약체결일, 대금 등

(단 이하 표에서 제1심피고 E은 기재되지 않음)

1	A	AF	2007. 2. 10.	233,800,000	23,380,000
AG	2007. 2. 10.	217,000,000	21,700,000		
2	B	AH, AI	2007. 3. 16.	487,000,000	48,700,000
3	C	AJ	2007. 2. 12.	109,060,000	10,900,000
4	D	AK	2007. 4. 4.	490,000,000	49,000,000
6	F	AM	2007. 3. 23.	561,660,000	56,000,000
7	G(Y 상속인)	Z	2007. 2. 12.	120,000,000	12,000,000
8	H	AN	2007. 2. 12.	154,800,000	15,480,000
9	I	AO	2007. 3. 10.	200,000,000	20,000,000
10	J	AP	2007. 2. 15.	86,600,000	8,660,000
11	K	AQ	2007. 2. 7.	90,825,000	9,000,000
12	L	AR(1/2 지분씩 소유)	2007. 2. 15.	147,810,000	14,780,000
2007. 2. 15.	190,000,000	19,000,000			
14	N	AS	2007. 2. 15.	190,000,000	19,000,000
15	O	AT	2007. 2. 9.	288,750,000	28,870,000
16	P	AU	2007. 2. 6.	192,000,000	19,000,000
17	Q	AV(1/2 지분씩 소유)	2007. 4. 13.	290,000,000	29,000,000
2007. 2. 13.	114,000,000	11,400,000			
19	S	AW	2007. 2. 13.	114,000,000	11,400,000
20	T	AX	2007. 2. 7.	209,070,000	21,000,000
21	U	AY	2007. 2. 7.	152,640,000	15,000,000
22	V	AZ	2007. 3. 13.	140,000,000	14,000,000
23	W	BA	2007. 2. 10.	100,000,000	10,000,00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원고는 피고 B, I, O, S와 아래와 같이 유효기간을 추가로 정하였다.

<표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 유효기간>

1	A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
2	B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2007. 10. 31.까지 유효
3	C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
4	D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
6	F	2007. 10. 31.	-
7	G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
8	H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
9	I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2007. 9. 30.까지 유효
10	J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
11	K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
12	L	2007. 7. 31.	-
13	M	-	
14	N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
15	O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2007. 12. 31.까지 유효
16	P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
17	Q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
18	R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
19	S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2007. 12. 31.까지 유효(1차 연장)
20	T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
21	U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
22	V	2007. 9. 30.	-
23	W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

이를 제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 I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제6조 제2항이 삭제되어 있다).

<표3: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내용>

제2조(계약의 목적)

본 매매는 원고가 피고의 상기 토지 및 그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며, 이 사항을 피고와 원고가 상호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1.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피고, 원고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원고의 계약불이행시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며, 피고의 계약불이행시 원고가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투입비의 배액 중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피고 소유 토지면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중도금 또는 잔금이 늦어질 경우 원고가 농협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수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보상하고 잔금을 정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9조(명도책임 및 공부상 권리관계)

1. 해당부지의 명도 및 공부상 권리 관계(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지상권 등)는 피고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2. 원고는 피고의 명도가 원고가 통보한 명도예정일보다 1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토지상의 전세권자, 임차인, 지상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위변제를 할 수 있으며, 대위변제금은 피고의 잔금에서 정산한다.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의 책임 및 변제금의 과소로 항변하지 못한다.

제10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서에 날인 후 계약금 입금 시 즉시 발생하며, 계약금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 시 또는 직접 수령 후에는 피고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못한다.

제12조(특약사항) 아래 별도 특약은 상기 일반조항에 우선한다.

[권리 양도 금지]

- 1) 피고는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와 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근저당, 지상권,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이중 매매계약 등 본 계약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피고가 전적으로 지기로 한다.

2) 피고는 본 약정계약 후 어떠한 경우라도 타 업체나 개인한테 이중 계약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원고는 2008. 9. 18. 광양시에 이 사건 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다. 그 후 전라남도지사는 2009. 12. 4. AD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였다가, 2014. 1. 23.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부영주택'이라 한다)으로 시행자를 변경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 소유권 변동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이 사건 토지 소유권 변동>

1	A	AF	2015. 5. 21.	매매	부영주택
AG	2015. 5. 21.	매매	부영주택		
2	B	AH, AI	2015. 5. 22.	매매	부영주택
3	C	AJ	2009. 12. 18.	협의취득	광양시
4	D	AK	2017. 2. 28.	매매	부영주택
6	F	AM	2017. 2. 3.	매매	부영주택
7	G	Z	2015. 5. 22.	매매	부영주택
8	H	AN	2015. 5. 22.	매매	부영주택
9	I	AO	2015. 7. 21.	매매	부영주택
10	J	AP	2009. 12. 10.	협의취득	광양시
11	K	AQ	2015. 5. 22.	매매	부영주택
12	L	AR	2015. 5. 22.	매매	부영주택
2015. 5. 22.	매매	부영주택			
14	N	AS	2015. 5. 22.	매매	부영주택
15	O	AT	2009. 12. 10.	협의취득	광양시
16	P	AU	2015. 5. 22.	매매	부영주택
17	Q	AV	2015. 5. 22.	매매	부영주택
18	R		2015. 5. 21.	매매	부영주택
19	S	AW	2015. 5. 22.	매매	부영주택
20	T	AX	2015. 5. 22.	매매	부영주택

1	A	AF	2015. 5. 21.	매매	부영주택
21	U	AY	2015. 5. 21.	매매	부영주택
22	V	AZ	2015. 8. 13.	매매	부영주택
23	W	BA	2015. 5. 22.	매매	부영주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마 제1호증, 을하 제1~4호증, 을머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D, BE, BF, BG, BH, C, D, G, H, J, K, N, P, Q, R, T, U, W(잔금지급기일을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로 정하고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피고들이다. 이하 '1그룹 피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 F, L, M, V(잔금지급기일을 특정일로 정한 피고들이다. 이하 '2그룹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2그룹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 2그룹 피고들의 계약에 따른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1, 2그룹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7. 6. 9.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1, 2그룹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1, 2그룹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1, 2그룹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1, 2그룹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승인을 받지도 못하고 1, 2그룹 피고들에게 잔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중도금 또는 잔금이 늦어질 경우 원고가 농협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수로 계산하여 피고들에게 보상하고 잔금을 정산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문언의 해석상 원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피고들에 대한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곧바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1항의 '원고의 계약불이행시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규정(이하 '계약금 포기 조항'이라 한다)은 앞서 본 제6조 제2항의 내용을 고려해볼 때, 원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잔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계약금 포기 조항이 적용되나, 그럼에도 원고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자 상당액을 피고들에게 보상하면 계약은 유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의무 외에 원고의 주된 의무를 찾기 어려운 이상, 제6조 제1항의 '을(원고)의 계약불이행'은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는바(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승인 신청이 반려되고 전라남도지사가 AD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시행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고시한 2009. 12. 4.경에는 원고가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1그룹 피고들의 경우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9. 12. 14.경 원고의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고, 그 이전에 2그룹 피고들의 앞서 본 잔금지급기일이 모두 도래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리고 그 때까지 원고가 1, 2그룹 피고들에게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무효가 되고 계약금은 계약금 포기 조항에 따라 1, 2그룹 피고들에게 몰취되었다고 봄이 옳다.

1, 2그룹 피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B, I, O, S(잔금지급기일을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이내'로 정하고 특약사항에 유효기간을 정한 피고들이다. 이하 '3그룹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3그룹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3그룹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3그룹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3그룹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그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포기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그의 귀책사유로 불이행하였으므로, 계약금 포기 조항에 따라 3그룹 피고들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그룹 피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기일을 '공동주택사업승인 후 10일 내'로 정하면서도 1그룹 피고들과 달리 별도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잔금 지급의무에 더하여 유효기간 내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동적 상태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정하였다고 보는 경우, 원고는 유효기간 동안 사업승인을 받을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는 반면 3그룹 피고들은 유효기간까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약금을 그대로 원고에게 반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계약서에 '유효기간 경과로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①항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그런데 원고는 유효기간까지 이 사건 사업 승인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광양시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2015년 8월경까지 3그룹 피고들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4. 원고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들의 주장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인도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와 상대방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가 제1~4호증, 을바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5년이 넘도록 피고들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1, 2항에 따라 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며, 계약금은 피고들에게 물취된 것으로 신뢰하였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피고들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피고들과 2007년 2~4월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08. 9. 18.에서야 광양시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후 전라남도지사는 AD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한국주택토지공사를

선정함으로써 2009. 12. 4.경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넘도록 피고들에게 계약 효력이나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2013년 4~5월경 광양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 진행을 청원한 것 외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② 더욱이 피고 F, H, K, L, M, Q, R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원고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여러 차례 보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피고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원고의 무대응 결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을 포기하였다는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1, 2항은, 그 문언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까지 그의 귀책사유로 잔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들의 토지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 이행과 관계없이 곧바로 계약 효력이 상실되고, 계약금은 피고들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로부터 부영주택에 토지를 매도할 때까지 약 8년 동안 권리양도금지 특약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이 법원에서 변경된 부분 포함)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노경필

판사김도연

판사류봉근